

<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>

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

◇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“입국시 PCR 음성확인서”를 제출하여야 하며,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됩니다.

1.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기준

☞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, 한국 정부가 지정 한 시설에서 7일(남아공·탄자니아 發 입국자는 14일)동안 격리 조치(내국인에 해당, 입소비용 12만원/일 자부담) 됨을 알려드립니다. ※ 외국인은 입국 불허

구분	기준
①검사방법	▶ 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* 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, 항원·항체 검출검사(RAT, ELISA 등)는 인정하지 않음 *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②발급시점	▶ 출발일 기준 72시간(3일)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* 예시) '21.3.10. 10:00시 출발 시 '21.3.7.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③필수기재	▶ 성명*, 생년월일**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*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(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) **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
④검사결과	▶ 검사 결과가 '음성' 일 것 *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'미결정', '양성'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
⑤발급언어	▶ '검사방법'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*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. (단,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 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)
⑥검사기관	▶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우즈벡, 러시아(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)의 경우,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*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/ 질병관리청(검역소) 홈페이지,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*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

※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(<http://overseas.mofa.go.kr>)에서 해당국가별 입국 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동반 영유아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여부

- 영유아를 동반한 **일행 모두가** **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**
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·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**면제**
 - 다만,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
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